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22
----------	------

2016년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0. 5. 이순자 의원 대표발의 【찬성자 18명】
2. 회부일자 : 2016. 10. 7.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순자 의원)

### 1. 제안이유

-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언어 통역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함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음.
- 이를 위하여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으나, 수화언어통역을 통한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구체성이 없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음.
- 이에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시설에 수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권과 신체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2. 주요내용

- 시장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함(안 제6조).
- 시장은 수어통역사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7조).
-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추계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제정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청각장애인의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안 제5조)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 등 편의증진(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보호(안 제6조)하며, 수어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8조)하고, 민간운영시설의 자막시스템 등 권장(안 제9조)과 수어 활성화 공적 관련 포상(안 제10조) 등을 규정함.

- 본 제정안은 총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제8조(지원)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10조(포상)
부 칙

##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016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91,517명으로, 이 중 11.3 %인 44,327명이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임.

서울시 장애 유형별 현황(2016. 9월말 기준)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기타
391,517	190,998	42,358	42,330	41,234	3,093	25,100	4,955	16,101	15,302	10,046
100%	48.8%	10.8%	10.8%	10.5%	0.8%	6.4%	1.3%	4.1%	3.9%	2.6%

- 농인<sup>1)</sup>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사회적 소외 계층에 놓이게 되는 실정임.
- 서울시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302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299, 2016.10.11.)”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애인 중 농아인과 시각장애인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농아인 복지사

1)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비(13,169백만원)가 시각장애인 복지사업비(27,775백만원)의 절반수준으로, 농아인은 의사표현이 어려워 타 장애유형에 비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 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보장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에서 장애인 관련 부서를 본 조례 제정안의 소관부서로 관리하는 것은 상위법의 관리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의 관련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2016. 08. 04. 시행)은 한국수화언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사항>**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규정

※ 2013년에 국회에 4건의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sup>2)</sup>이 제출(발의)되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2016년 2월 대안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

-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국수화언어를 국어와 같은 공식 언어로 인정한 것임.

### 3 주요사항 검토

####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한국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

2) 국회 제출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 :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08.20.) 「수화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3.10.08.), 「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3.10.22.),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2013.11.26.)

장애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원해 왔음.

- 또한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수화언어법”)을 제정하여 한국 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 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의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는 수화언어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수화언어법 제7조<sup>3)</sup>에 따른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으로,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라. 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안 제6조)

- 본 조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화언어법 제16조<sup>4)</sup>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sup>5)</sup>,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sup>6)</sup> 등에 각각 근거한 내용을 조

---

3)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열거된 정의규정 각 조항별 행위자 생략 → 공공기관 등을 말함)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례에 명문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편의증진을 위해 긍정적이라 사료됨.

- 제4항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과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에 대하여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청각장애인 등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공공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등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① 홍보 영상물 특성에 따라서는 영상 흐름, 편집 기법, 자막 디자인 등에 따라 메시지 전달이 달라질 수 있으며, ②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 여부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지연의 문제가 있고, ③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의 추가 제작에 따른 소요 예산의 확보 문제 등이 있다는 서울시 집행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안
<p><b>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b>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u>제작하여야 한다.</u></p>	<p><b>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b>            ① ~ ③ (생략) &lt;제정안과 같음&gt;            ④-----            -----            -----  <u>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만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u></p>

**마. 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안 제7조)**

- 수화언어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은 청각장애인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6)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한국수화언어법 외 한국수어 등 관련 규정

관련 법률	규정 사항
<p>장애인복지법</p>	<p><b>제22조(정보에의 접근)</b>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b>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b>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b>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b>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b>한국수어 통역</b>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b>제23조(편의시설)</b>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b>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b>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p><b>제3조(정의) 제8호 나목</b>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b>한국수어</b>,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b>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b>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제6호)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b>한국수어 통역자</b> 등의 보조인 배치</p> <p><b>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제4호</b>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b>한국수어 통역</b>,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b>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b>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b>한국수어 통역</b>,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b>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p>

	<p>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b>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b>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b>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b>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b>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b>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b>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b>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b>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b>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p>	<p><b>제4조(접근권)</b>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b>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b> 가진다.</p> <p><b>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b>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p> <p><b>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b>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b>한국수어 통역</b>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국어기본법</p>	<p><b>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b>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b></p>



## 참고자료 2

### 서울특별시 시정과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주요 영상물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소관부서
소통방통 (기획영상물 및 방송물- 생방송, 녹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시청자가 내부직원인 사내방송 뉴스</li> <li>- 시 정책방향 공감대 형성 및 청렴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방송</li> <li>- 시정뉴스 및 '이달의 관리자', 격무부서 격려 프로그램, 심층인터뷰 및 기획대담 등</li> </ul> </li> <li>○ 제작/송출 주기 : 제작 주 5회(월~금), 송출 주 5회(8:55~9:00)</li> <li>○ 홍보방법 : 신청사 및 별관 각 부서 TV</li> <li>○ 연간 제작편수 : 방송 약 300여 회(월 20여 회)</li> <li>○ 현재 한글자막 사용 중</li> </ul>	시민소통 담당관
라이브 서울 (방송물-녹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정 현장 실시간 중계</li> <li>- 시정·생활정보 영상콘텐츠 제작·확산</li> </ul> </li> <li>○ 제작/송출 주기 : 방송 수시(이슈발생시), 영상 : 수시(필요시)</li> <li>○ 홍보방법 : 6개 매체 송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 라이브서울, 유튜브, 아프리카TV, 다음TV팟, 유튜브</li> <li>- 영상 : 라이브서울, 유튜브, 다음TV팟, 네이버TV캐스트, 판도라TV</li> </ul> </li> <li>○ 연간 제작편수 : 방송 약 500회(월 40여회), 영상 : 약 150편(월 12여편)</li> <li>○ 한국어수어 및 한글자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콘텐츠(30분 이상) : 기자설명회, 정책토론회 중심으로 한국어수어 통역 제공 80여회('16년 기준)</li> <li>- 기획영상물(3분 내외) : 한글 요약 자막 표출</li> </ul> </li> </ul>	뉴미디어 담당관
의정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li> </ul> </li> <li>○ 연간 제작 편수 : 의정포커스(회기별 10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편 5편, 상임위원 45편</li> </ul> </li> <li>○ 의정포커스 연간 50편 수화 포함 제작</li> </ul>	시의회 공보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22
----------	------------

제안연월일 : 2016년 12월 19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의무규정은 영상물 제작 환경, 예산 부담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물의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함.

## 2. 주요내용

-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4항).
- 조례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함(부칙).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부칙 중 “2017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b>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b></p> <p>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u>제작하여야 한다.</u></p>	<p><b>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b></p> <p>④----- ----- -----<u>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u>2017년 1월 1일</u>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공포한 날</u>-----</p>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과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